

의안번호	제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회)	

여권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외교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정부입법으로 개정 완료('23.3.28.)한 여권법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여권법내 만 나이 예외규정(연 나이 사용조항)을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행정기관 소속위원회 정비 관련 조항 정비

- 1)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여권정책협의회로 명칭 변경
- 2) 위원 관련 조항 삭제 및 자문단 구성 조항 신설 등

나. 만 나이 예외 규정(연 나이 사용 조항) 정비

- 1) 연 나이 사용 명확화를 위한 정비

(18세 이상 37세 이하 → 여권을 발급하는 해에 18세 이상 37세 이하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실시 예정

3) 행정규제 심사 예정

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여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제2호 중 “18세”를 “여권을 발급하는 해에 18세”로, “이하로”를 “이하가 되는 사람으로서,”로 한다.

제9장의 제목 “여권정책심의위원회”를 “여권정책협의회”로 한다.

제31조의 제목 “(여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)”을 “(여권정책협의회의 구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여권정책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”를 “여권정책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)”로, “위원회의”를 “협의회의”로 하며,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행정기관의 소속”을 “행정기관 소속 국장급”으로, “장의 추천을 받아 외교부장관이 임명하는”을 “장이 추천하는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.

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1조의2(자문단의 구성)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적·기술적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.

1. 신분증 국제표준, 개인정보 보호, 여권 발급장비나 보안기술 분야의 전문가

2. 법률, 회계 전문가

3. 영사(領事)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

제32조 및 제32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.

제33조의 제목 “(분과위원회의 구성)”을 “(분과협의회의 구성)”으로 한다.

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협의회에는 다음 각 호의 분과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하여,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.

제33조제1항제1호 중 “여권행정분과위원회:”를 “여권행정분과협의회:”로, “심의사항 중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”을 “심의사항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여권사용정책분과위원회:”를 “여권사용정책분과협의회:”로, “심의사항 중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”을 “심의사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”를 “분과협의회는 분과협의회”로, “분과위원회의 부위원장”을 “분과협의회의 부위원장”으로, “분과위원회의 위원”을 “분과협의회의 위원”으로, “을 둔다”를 “으로 구성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분과위 부위원장은 위원회의”를 “분과협의회 부위원장은 협의회”로, “위원회 위원”을 “협의회 위원”으로, “분과위원회”를 “분과협의회”로 한다.

제34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위원회”를 각각 “협의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분과위원회의”를 “분과협의회”로 한다.

제35조제1항 본문 중 “위원회의”를 “협의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위원회”를 “협의회”로, “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등 관계 전문가를”을 “관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”를 “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정수 과반”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위원회”를 “협의회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분과위원회”를 “분과협의회”로, “위원회의 절차”를 “협의회의 절차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위원회의 회의”를 “협의회의 회의”로, “위원회의 의결”을 “협의회의 의결”로 한다.

제36조 본문 중 “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”을 “제31조의2에 따라 협의회 또는 분과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자문에 응한 자문의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1조, 제31조의2, 제32조, 제32조의2, 제33조, 제34조, 제35조, 제36조는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6조(일반여권의 유효기간) ① (생략)	제6조(일반여권의 유효기간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구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일반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. 다만,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인지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<u>18세 이상 37세 이하</u> 로 병역준비역, 승선근무예비역, 보충역 또는 대체역(복무 만료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, 복무를 마친 경우 또는 「병역법」 제70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를 37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 날까지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)에 해당하는 사람: 5년	2. <u>여권을 발급하는 해에 18세 ----- 이하가 되는 사람으로서,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3. 삭제	
4. ~ 7. (생략)	4. ~ 7. (현행과 같음)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
<u>제9장 여권정책심의위원회</u>	<u>제9장 여권정책협의회</u>

제31조(여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)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권정책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은 외교부 제2차관이 되고, 부위원장은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이 되며,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
1. 회계, 개인정보 보호, 여권 발급장비나 보안기술 분야의 전문가 중 외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

2. 법률 전문가 중 외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

3. (생략)

4. 안보·치안·출입국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외교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

5. 영사(領事)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 외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

<신설>

제31조(여권정책협의회의 구성) -

----- 여권정책협의회의(이하 “협의회”--

----- 협의

회의 -----

-----.

<삭제>

<삭제>

3. (현행과 같음)

4. -----

----- 행정기

관 소속 국장급 -----

----- 장이 추천하는 -----

<삭제>

제31조의2(자문단의 구성) 위원장

제32조(위원의 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공무원인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동안으로 한다.

제32조의2(위원의 해임·해촉 등) 외교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(제31조제3호에 따른 여권사용제한 등의 대상 국가나 지역을 담당하는 국장은 제외한다)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(解囑)하거나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

은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적·기술적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.

1. 신분증 국제표준, 개인정보 보호, 여권 발급장비나 보안기술 분야의 전문가

2. 법률, 회계 전문가

3. 영사(領事)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

<삭 제>

<삭 제>

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
제33조(분과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두어,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게 한다.

1. 여권행정분과위원회: 법 제18조제1항제1호·제2호 및 제6호(여권행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)의 심의사항 중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

2. 여권사용정책분과위원회: 법 제1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6호(여권사용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)의 심의사항 중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

제33조(분과협의회의 구성) ① 협의회에는 다음 각 호의 분과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하여,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.

1. 여권행정분과협의회의: -----

----- 심의사항

2. 여권사용정책분과협의회의: --

-- 심의사항

②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“분과위원장”이라 한다)과 분과위원회의 부위원장(이하 “분과위 부위원장”이라 한다)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분과위원회의 위원(이하 “분과위원”이라 한다)을 둔다.

③ 각 분과위원장과 분과위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각각 겸임하며,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을 전문성을 고려하여 각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으로 지명한다.

제34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그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은 분과위원회의 경우에 준용한다.

제35조(회의 및 의사) ① 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이 있을 때 위원장

② -- 분과협의회는 분과협의회 -----
----- 분과협의회의 부위원장-----

----- 분과협의회의 위원-----
-----으로 구성한다.

③ ----- 분과협의회 부위원장은 협의회 -----

----- 협의회 위원-----
----- 분과협의회 -----
-----.

제34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----
----- 협의회-----
-----.

② 협의회 -----

-----.

③ ----- 분과협의회 -----
-----.

제35조(회의 및 의사) ① 협의회

이 소집한다. 다만,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소관 심의사항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등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위원회의 의결로서 의사·의결정족수를 강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소집하며, 그 밖의 회의 및 의사 절차는 위원회의 절차를 준용한다.

⑤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36조(수당 등)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

-----.

-----.

② 협의회-----
----- 관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-----

--.

③ 협회의 회의는 위원정수 과반 -----

----. ---- 협의회-----
-----.

④ 분과협의회-----

----- 협회의 절차 -----
-----.

⑤ ----- 협의회의 회의-----
----- 협회의 의결-----.

제36조(수당 등) 제31조의2에 따라 협의회 또는 분과협의회의

및 제3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,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<u>운영과 관련하여 자문에 응한</u> <u>자문의원</u> ----- ----- -----. <u><단서 삭제></u>
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외교부 여권과	
연 락 처	(02) 2002 - 0133